

가정의 달, 5월이다. 꽃가게마다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즐비하고 부모님께 드릴 꽃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밝다. 꽃 한 송이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가슴에 단 꽃 한 송이에서 자신을 생각해 주는 자식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노부모들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 보인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꽃 한 송이 달아 드릴 수 없는 아쉬움을 어찌 글로 다 표현 할 수 있으랴. 문득 옛 시인 박인로님이 쓴 시조 한 편이 생각난다.

“반 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미는/ 품어가 반길 이 없으니 글로 설워 하노라.”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손님 대접용으로 내놓은 소반 위의 홍시감이 너무도 고와, 유자를 좋아하는 어머니께 유자대신 갖다 드리고 싶지만 가지고 가도 반길 이 없어 그것을 서러워한다는,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리며 쓴 시조가 지금 내 형편과 같아, 절절이 가슴에 와 안긴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지만 사람이 남긴 말이나 행동, 사상, 교훈은 오래도록 살아 있으니 그만도 감사할 일이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며 항상 조곤 조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삼남매 중 오빠는 고등학교부터 외지로 유학을 보내셨고, 동생은 나이가 어려 자연히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대화 상대가 되었는데도 모른다.

어머니는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도 들려 주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평생 교훈이 될 좋은 말씀을 자주 들려주셨다.

“눈이 밝을 때 책을 많이 읽고, 이가 성할 때 많이 먹거라”

“몸이 성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복을 받게 된단다.”

“곡식은 흘러도 쓸어 담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단다. 항상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 드릴 지 생각해 보고 말을 하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이 같은 보석같이 귀한 말씀들을 어린 시절에는 건성으로 듣기도 하였고, 두 세 번 말씀을 하실 땐 때론 귀찮게도 여겨졌다.

그러나 철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놀란다.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그 잔소리가 약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을 철부지 어린 시절에 어찌 알 수 있

으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며,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고마울 때가 많았다.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슬기롭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

어머니 생전에 가끔 용돈을 드리면 “에구~네가 허로 받을 갈아서 힘들게 번 돈을 주는구나. 정말 고맙게 잘 쓰겠다.”고 하시며 교사인 내가 학기 초에 목소리까지 변해가며 직장 생활하는 딸의 모습을 안쓰러워하시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말씀뿐만 아니라 한 남편을 80평생 내조하시며, 농부의 아내로 남편을 도와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하시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시며 자식들을 교육시키신, 그 삶 자체가 빛나는 교훈이리라.

“자식은 앞에서 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며 크다”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 그 자식이 자라 부모가 되는 역사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들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다.

출향인 칼럼

황연옥

시인, 고성문화회 부회장



어머니의 교훈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누가 우선권자가 되는지

문) 저는 2007. 4. 5. 갑에게 7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기일인 2007. 6. 5.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돈이 궁해진 갑은 자신이 을에게 7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줄테니 을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면서 을명의로 된 차용증을 갑으로부터 받았습니 다. 그리고 2007. 6. 12. 을에게 갑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저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을은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음을 2007. 6.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차용증서도 가지고 있으며 병보다 먼저 채권 양도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와 병은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요?

답)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에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게 되어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관하여「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일자라 함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으로서(민법 부칙 제3조),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을 살펴보면, 채권양도인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00만 원의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 을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도 않았음에 반하여, 병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귀하가 병보다 먼저 채권의 양도를 받았더라도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병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 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되므로, 채무자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여 갑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나들이 땐 ‘꽃가루 위험지수’ 확인하세요

자연의 왕성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이다.

화려한 꽃들의 향연속에 벌나비가 날아들 듯, 녹음이 짙어지는 화려한 자연 속으로 뛰어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래서 화사한 주말이면 사람들은 한껏 꾸미고 준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들이에 나선다.

하지만 세상이 다 좋을 수만은 없는 듯하다. 추운 계절도 아닌데 일부 상춘객들은 콧물, 재채기가 마구 쏟아지는

것이다. 바로 꽃가루가 범인이다.

이 꽃가루를 들이마시게 되면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을 동반한 결막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 꽃가루와 미세 흩먼지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코와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계절은 보통 신경이 쓰이는게 아닐까.

그런데 꽃가루 농도를 예상하고, 농도

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발생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기상청 홈페이지(보건기상정보)다.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은 꽃가루 농도의 위험지수가 높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과격한 운동도 잠시 참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마스크라도 착용하자.

꽃가루 위험지수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매우 높음=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

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높음= 대개의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 자제를 권한다.

◇보통=약한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야외활동시 주의가 필요하다.

◇낮음= 알레르기 위험도는 낮으나,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자.

(속초기상대 제공)